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3.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11.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외 5명(정순옥, 이영빈, 김정희, 도하석, 남현주)
- 발의일자: 2025. 2. 26.(수)
- 회부일자: 2025. 2. 26.(수)
- 검토기간: 2025. 2. 26.(수) ~ 3. 5.(수)

2. 제안이유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제50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2. 26. ~ 3. 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구민이 다양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올바른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안 제7조는 교육 자료 개발, 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스마트 도시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활용하기 위해 비판적 이해력을 키우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구민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 지원이라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관계 법령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